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40 제출연월일: 2024. 7. 23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*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* 배타적발행권자: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·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 거나 복제·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

법률 제 호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8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③ 제58조제3항(제63조의2,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38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제58조제3항(제63조의2, 제88	<u><삭 제></u>
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	
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	
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	
<u>하지 아니한 자</u>	
4.・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제142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142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58조제3항(제63조의2, 제88
	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
	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
	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
	<u>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</u>
	과태료를 부과한다.
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 에 따른 과태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	
과・징수한다.	

[별지 제1호서식]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
1	안 제138조제3호 (벌칙), 안 제142조제3항 (과태료)	 ○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적용되는 벌칙인 형벌을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* * (종전) 벌금 500만원 이하 → (개정) 과태료 500만원 이하 ** 배타적발행권자: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・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・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ę	년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	1	안 제138조제3호 (벌칙), 안 제142조제3항 (과태료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○ 개정안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지양하고자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지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(과태료)를 부과하도록 제 재를 완화하는 법안으로, 이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 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O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•국장
장진숙	강규호	정태경	정향미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규호	044-203-2476	kyu425@korea.kr